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상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010 발의연월일: 2024. 10. 29

발 의 자: 박상혁 · 김주영 · 이해식

한준호 • 이연희 • 정진욱

홍기원 · 김용만 · 박홍근

염태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인천지방법원은 인천광역시를 관할하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부천시·김포시를 관할하고 있음.

2025년 3월 1일 설치되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은 인천광역시 계양구·서구·강화군을 관할하게 되는데, 김포시는 지리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부천시보다 인천광역시 계양구·서구·강화군에 더 가까움.

이에 김포시 관할 법원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북부지원으로 변경하여 김포시민들의 법원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(안 별표 2, 별표 3 및 별표 7).

법률 제 호
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중 인천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ما جا	북 부	강 화	강 화 읍
인 천 	북 부	김 포	김 포 시

별표 3 중 서울고등법원의 인천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		인천광역시 동구・중구・미추홀구・연수구・남동구・
		부평구・옹진군
인 천	북 부	인천광역시 계양구·서구·강화군, 김포시
	부 천	부천시

별표 7 중 인천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처	북 부	강 화	인천광역시	강화군
인 선	북 부	김 포	경 기 도	김포시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으로 2025년 3월 1일부터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25년 2월 28일 현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.